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388
------	------

제출일자 : 2023. 9. 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1. 제안이유

안정적인 마을버스운송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
- 나. 재정지원 (안 제3조부터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 나. 예산조치: 구비 편성
- 다. 합의기관: 서울특별시(버스정책과)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2023. 7. ~ 2023. 8. (20일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③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정한다.

④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재정지원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마을버스 재정지원(조례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필요한 비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세출	마을버스 재정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①)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입								
	소계(②)							
□ 총 비용(①-②)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자체재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재원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5. 작성자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정은상(2627-172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재정지원금 : 연간 2억원
 - 417천원 × 40대(지원차량대수) × 12개월
 - ※ 마을버스 대당 월 평균 적자금액 : 417천원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23. 6. 8.] [법률 제1855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